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10월13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수도행정과장 박명호)

제안이유

-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상수도 요금부과 업종 및 요율이 조정되어 동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중수도 설치 운영에 따른 상수도 요금감면 내용을 개정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의 업종과 동일하게 개정함(안 제12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7호
의결 년월일	2003. 10. 15 (제107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10. 1.

제출자 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-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상수도 요금부과 업종 및 요율이 조정되어 동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중수도 설치 운영에 따른 상수도 요금감면 내용을 개정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의 업종과 동일하게 개정함(안 제12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제2호중 “업무용”을 “산업용”으로 하고, 동항제3호중 “영업용”을 “일반용”으로 하며, 동항제4호중 “공업용”을 “전용공업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요금감면)① · 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업무용</u> :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3. <u>영업용</u> :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4. <u>공업용</u> :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<p>④ · ⑦ (생략)</p>	<p>제12조(요금감면)① ·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산업용</u> ----- ----- 3. <u>일반용</u> ----- ----- 4. <u>전용공업용</u>----- ----- <hr style="border: 0.5px solid black; margin: 5px 0;"/> <p>④ · ⑦ (현행과 같음)</p>